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동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03 발의연월일: 2025. 4. 17.

발 의 자:유동수·김교흥·김용만

서영교 • 허종식 • 박민규

임광현 · 김병기 · 민병덕

노종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생명보험,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각 연도마다 지급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 중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로 인정하고, 인정 보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. 이는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대비 및 의료비 지출 등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.

그런데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세액공제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외제차 등 고가 자동차의 소유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료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한도까지 받고 있어,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취지에 맞지 않고 최근의세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혜택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제기됨. 참고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전체 자동차보험료 평

균은 69만5천800원으로 70만원을 넘지 않고 있음.

또한 최근 보장성 보험과 함께 노후 및 건강을 위한 사적 안전망에 해당되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년 넘게 동결되어 있음.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별 합계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제1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합계액"을 "합계액(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 한도로 합계액에 포함한다)"으로, "연 100만원"을 "연 12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근로	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
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	
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	
같다)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	
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	
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	
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	
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	
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(제	
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)에	
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	
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	
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보	
험료별로 그 <u>합계액</u> 이 각각 <u>연</u>	<u>합계액(「자동차</u>
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	손해배상 보장법」 제2조에 따
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	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
으로 한다.	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
	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
	한도로 합계액에 포함한다)
	<u>연 120만원</u>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① (생 략)

② ~ ① (현행과 같음)